

제348회 정례회  
2016. 6. 8.(수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 : 박한범 의원 등 7명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5년 6월 1일

## 3. 제안이유

-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 4. 주요내용

- 가.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2조)
- 나. 협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)
  - 위원구성(15명 이내) : 의장(행정부지사), 부의장(위촉직 중 호선),  
당연직 위원(기획관리실장, 행정국장, 경제통상국장)
- 다. 협의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, 여비 지급규정 (안 제9조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

(이하 “법”이라 함)제19조에 따른 “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

- 법 제19조제2항에 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 조례 제정은 타당함.
  
-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 - 안 제2조는, 협의회 기능으로 ▲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, ▲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(이하 “지역인재”라 한다)의 채용실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, ▲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, ▲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·조정하도록 규정하고,
  
  - 안 제3조는,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특히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함.
    - 위원 수 : 15명 이내 (의장, 부의장 포함)
    - 의장 (도 행정부지사) , 부의장 (위촉직 중 호선)
    - 당연직 위원 : 도 기획관리실장, 행정국장, 경제통상국장
  
  - 안 제5, 6, 7조는, ▲협의회 회의 소집, ▲개의회 의결 정족수, ▲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 ▲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   - 특히 안 제5조제4항의 임시회의에 한정해 서면 심의·의결 가능 규정은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제2항을 준용한 것으로 법리적으로나 운용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
  
  - 안 제8조는, 필요시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해당 자

료를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,

- 안 제9조는, 협의회 출석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, 여비 지급에 대해 규정함.
- 본 조례안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 계획 수립·시행, 실적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육성지원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법률의 범위 안에서, 입법예고 및 도 담당 부서(정책기획관)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마련된 바, 타당하다고 사료됨.